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004
----------	------

2022. 3. 17.(목)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일자: 2022년 3월 8일

다. 회부일자: 2022년 3월 10일

라. 상정일자: 2022년 3월 17일

(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기획국장 이종수)

가. 제안이유

- 「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실효되었고, 「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서성범)

- 본 조례안은 지난 2016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을 상실했고 그 기능을 대체하는 「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가 지난 2019년 제정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.
- 효력, 기능을 상실한 조례에 대한 정비는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법무 및 사업 부서에서는 정비할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해 정비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기적절하게 제정·개정·폐지를 추진하여야 할 것임.
- 본 조례 폐지안의 다른 부분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요지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-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5조(기금의 통합·폐지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·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24., 2017. 7. 26.>

1.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
2.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
3.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
4.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24., 2017. 7. 26.>